#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51호)

#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0. 07.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08.

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# 2. 개정이유

- 가.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어도,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을 완화하고,
- 나.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용 시 '보조금 결제 전용카드' 및 소상공인 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'제로페이' 사용 근거 마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단서조항 및 교부조건 신설(안 제16조, 안 제17조)
  -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사업정산 전까지 체납의 완납
- 나. 지방보조금 사용 시 '제로페이' 사용 근거 마련(안 제19조의2)
  -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체크카드) 또 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를 사용하여야 한다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 다. 합의

- 1) 기획감사담당관(법무개혁담당): 규제심사
- 2) 복지지원과(여성가족담당): 성별영향분석평가

####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182호
  - 가) 예고기간: 2019. 9. 3. ~ 2019. 9. 23.(20일간)
 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붙임

## 5. 본 문: 붙임과 같음

## 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어도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,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용 시 "보조금 결재 전용카드"및 소상공인의 가드결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위한 "제로페이" 사용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해소하지 않을 시 대책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7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- 8. 토 론: 없음.
- 9. 심사결과
  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